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72

발의연월일: 2020. 12. 9.

발 의 자:박 정·권칠승·김승원

송영길 · 송옥주 · 양정숙

유정주 • 이광재 • 이병훈

이상헌 · 이성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부처의 공공디자인 등록건수는 2005년 32건에서 2014년 120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말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17,154건의 공공디자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을 만들고 있지만,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 발자취 등을 지우기 위해 새로 운 홍보예산을 책정하는 등 투자의 중복성과 기존에 만들어진 공공디 자인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7조제3호).

법률 제 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체계적인"을 "체계적·통합적인"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진흥을"을 "진흥 및 통합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책무) <u>①</u>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u><신 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
	<u>적·체계적·통합적인</u>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u>한다.</u>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
	<u>수</u>)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③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 <u>체계</u>	2 <u>체계적</u>
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u>· 통합적인</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 2. (생략)
- 3. 공공디자인 <u>진흥을</u> 위한 정 책에 관한 사항
- 4. ~ 6.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진흥 및 통합을</u>

4. ~ 6. (현행과 같음)